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 (고광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7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고광민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용호, 김종길,  
김혜영, 김혜지, 문성호,  
박춘선, 소영철, 심미경,  
이성배,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정책 유효성 검증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폐지 대상 정책 등의 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3101600000004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고광민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2.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6,500천원(연평균 5,3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5,3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중 선출), 당연직 위원(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포함 최대 15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당연직 위원(기획조정실장), 시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1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전제
- 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회의시 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6,500천원(연평균 5,300천원)

- 총비용 =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위원회운영비 (안 7조)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소계 (b)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 총 비용(b-a)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 검증위원회 운영비 = 26,5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2,000천원+4,500천원

- 참석수당 = 22,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1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최대 구성인원 15명 중 위원장(부교육감), 당연직위원(기획조정실장),  
시의원 2명을 제외한 11명만 계상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